

[일련번호 : 3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법원의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 사건에 대한 집행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■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■■■■과는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확정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 처리 등 과태료 부과·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1조(법원에의 통보)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이에,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,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43조(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) 규정에 따라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,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집행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

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▣▣▣▣과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법원으로부터 확정 통보된 과태료 재판 사건에 대한 집행위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, 각 법원에서 확정 결정된 과태료 금액을 집행위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건 4,1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, 법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4건에 대하여 20%를 감경하여 138천원을 과소 부과 하는 등, 총 18건 4,318천원의 과태료를 미부과하거나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.

[표]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 부적정 내역

연번	위반 대상자명	재판 확정일	집행위탁일	법원 확정금액(A) (원)	과태료 부과금액(B) (원)	미부과,과소 부과액(A-B) (원)	지적사항
				4,870,000	552,000	4,318,000	
1		2022.03.26.	2022.07.04.	75,000	-	75,000	미부과
2		2022.07.12	2022.07.27.	300,000	240,000	60,000	20% 감경 부적정 적용
3		2022.08.04	2022.08.04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4		2022.08.02	2022.08.02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5		2022.09.01	2022.09.05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6		2022.09.01	2022.09.05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7		2022.09.01	2022.09.05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8		2022.09.01	2022.09.05.	150,000	-	150,000	미부과
9		2022.09.02	2022.09.05.	50,000	40,000	10,000	20% 감경 부적정 적용
10		2022.10.29	2022.11.14.	150,000	-	150,000	미부과
11		2022.11.17	2022.11.30.	300,000	240,000	60,000	20% 감경 부적정 적용
12		2022.12.16.	2023.01.03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13		2022.12.17.	2023.01.03.	300,000	-	300,000	미부과

연번	위반 대상자명	재판 확정일	집행위탁일	법원 확정금액(A) (원)	과태료 부과금액(B) (원)	미부과,과소 부과액(A-B) (원)	지적사항
14		2023.01.04	2023.01.18.	500,000	-	500,000	미부과
15		2023.03.04	2023.04.04.	200,000	-	200,000	미부과
16		2023.11.21	2023.11.15.	40,000	32,000	8,000	20% 감경 부적정 적용
17		2024.07.12	2024.07.18	900,000	-	900,000	미부과
18		2024.09.03	2024.09.06	105,000	-	105,000	미부과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▣▣▣▣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▣▣▣▣과장은

법원으로부터 집행위탁 받았음에도 미부과 또는 과소부과한 확정 결정 과태료 4,318천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·징수 등 필요한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,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과태료 집행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